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?

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
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,
엄마 아빠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
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해요!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세부 내용

-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~35시간 범위로 사용할 수 있어요.
- 단축근로로 감소된 임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통해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,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더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.

올해 7월부터 달라져요!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

통상임금 100% 지원시간을 주당 5시간 ▶ **10시간으로 확대**

현행 기준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% (최소 주 5시간),
월 통상임금의 80% (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X 근로시간 단축비율)

개정 기준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% (**최소 주 10시간**),
월 통상임금의 80% (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X 근로시간 단축비율)

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

대상 중소기업 사업주

지원요건 1) 주 10시간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(최소 30일)
2)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보상지급

지원금 월 최대 20만원

5월 5일 일요일

오늘의 기분 : 맑음

제목 : **오늘은 우리 가족 세상!**



♪♪♪ **엄마, 아빠, 아이** ♫
♪ **모두가 행복한 어린이날!**